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도 서 · 벽 지 교 육 진 흥 법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도서·벽지 교육기관의 신설, 등급 변경,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,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대상 중 공립 교육 기관의 경우,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시·도 조례에 따르도록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 제1호, 제2호를 신설하고 별표를 삭제

- 1) 도서벽지지역 공립교육기관의 신설, 등급변경, 폐지 등 잦은 개정 수요에 대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적기 반영이 곤란함에 따라
- 2) 공립 교육기관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에서 직접 명시하던 내용을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르도록 함
- 3)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시·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국립교육기관과 사립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
- 4)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향후 시행규칙 별표 개정 없이 시·도교육청 조례 개정만으로 신속하게 변경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나. 17개 시·도 교육청 개정 조례 및 교육부 시행규칙의 적용 시점이 일치하도록 20년 3월 1일 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부칙에 명시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협의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“별표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공립교육기관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른다.
2.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시·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국립교육기관과 사립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른다.
3. 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 (도서·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)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·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<u>별표와 같다.</u>	제2조 (도서·벽지지역과 등급별 구분)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·벽지의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<u>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<신 설></u> 1. <u>국립교육기관은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른다.</u> 2. <u>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시·도 조례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국립교육기관과 사립교육기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에 따른다.</u> <u>부 칙</u> <u>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	
연 락 처	044-203-6531 044-203-6521